2025년도 울산울주강소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공고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기업 육성 및 설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울산울주 강소특구 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울산울주)

□ **사업내용**

ㅇ 울산울주강소특구를 통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연계·확산을 위한 특구 내외 기업 수요발굴부터 기술이전·출자까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 지원

ㅇ 공공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창업자를 탐색·발굴하여 기술 출자·이전 등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의 경우,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병행

ㅇ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발굴체계를 구축하고,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 유망기술 매칭 및 기술이전 지원
수요기업 발굴	연구소기업 · Deep-tech기반 기업 후보 발굴, 설립 지원
BM·SMK제작	수요기업 분석을 통한 BM 제작(수요확정), 기업제안용 SMK 제작
연계협력 지원	강소특구 육성사업 및 타특구 연계 협력 지원

≪ 양방향 기술발굴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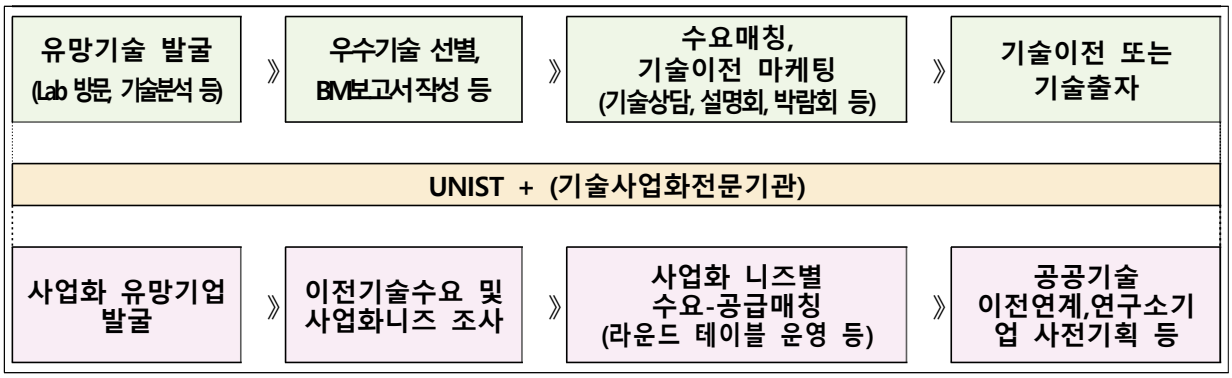

□ **사업예산** : 80백만원/ 1개 참여기관

□ **사업기간** : 2025. 3. 10 ～ 2026 . 3. 9 (12개월)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02.16.(일) 18:00 까지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특허법인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참여기관의 기관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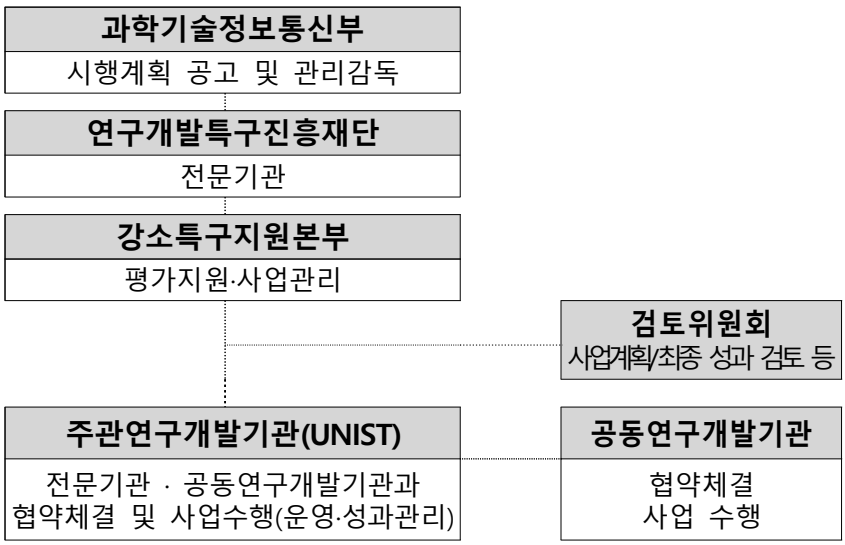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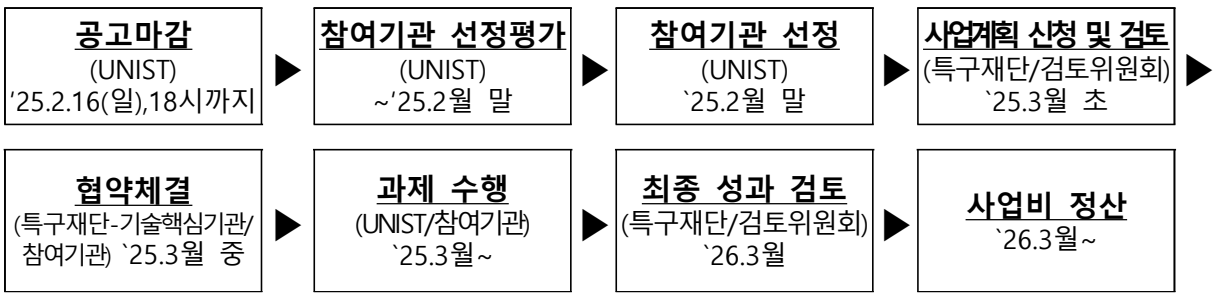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특구재단 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포털(www.innopolis.or.kr)

○ UNIST 홈페이지(https://unist.ac.kr)

○ 울산울주강소특구 홈페이지(https://innopolis.unist.ac.kr)

○ 신청방법 : **온라인 E-mail 접수**

- UNIST 특구육성팀 정수향 / suhyang@unist.ac.kr

○ 공고(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02.16.(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 제출**하고,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음

No.	서 류 명	비 고
1	사업 신청 공문	
2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참여기관 해당부분 기재)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22년~'24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신청자격 증명서류	해당 시 첨부
8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표준재무제표) 최근 설립된 사업자는 설립연도부터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사업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UNIST 특구육성팀	정수향	052-217-1767	suhyang@unist.ac.kr

4 평가기준 및 안내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20
추진일정 및 예산운영, 내부역량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10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역량	10
추진전략, 수행실적, 성공가능성	•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15
	• 강소특구 사업 참여 수행실적 및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실적	30
	•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15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서류접수 → 선정평가(UNIST) → 확정 → 협약(특구재단)

ㅇ **선정방식** : UNIST에서 구성한 검토위원회를 통한 선정

ㅇ **평가방법:** 발표평가 (PPT) 원칙(대면)

※ 선정절차의 경우 주관기관(UNIST)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발표평가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지원기업에 평가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 **지원제외 대상**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기 근거를 적용함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